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청결·**행복**·세상

- 2018년 당진3동 자체종합감사 -
감사 결과 처분 내용

2018. 6.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①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강비 해태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 당진3동에서는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사무분장) 제6항의 별표 8과 같이 사무 분장되어 이륜자동차 관련 등록업무 등을 하고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같은 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4항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4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5]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10일 이내인 경우 9,000원(대인은 6,000원, 대물은 3,000원)을, 10일을 초과하여 1일마다 1,800원(대인은 1,200원, 대물은 600원)을 부과하는 등 최고 300,000원(대인은 200,000원, 대물은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 따라서 당진3동에서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의 가입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가입자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172일(약 6개월)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고금액인 300,000원을 부과하여 미가입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당진3동에서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 2017년까지 총 ○○건, *,***,***원의 과태료 미 부과 등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이륜자동차 과태료 미 부과 현황 : 생략

【 처 분 요 구 】

2015 ~ 2018년까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미부과한 이륜자동차 과태료 *,***,***원을 추징하고, 관련 규정을 연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② 복무 규정 및 당직 근무 규칙 위반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당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이하 “근무 규칙”）」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근무규칙” 제6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본청 외의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기관은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 경비를 실시하는 경우에 정상 근무일의 경우 일과 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2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와 일직 근무에 있어서는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규칙”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중 청사내외의 방법·방호 및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업무를 무인전자경비 장치를 운용하는 경비업체에 위탁한 것이다.
- 당진3동에서도 “근무규칙”에 의거 정상 근무일의 경우 2시간의 사무실 대기 근무와 일직 근무일에는 통상적 근무시간을 준용하여야 하며, 정상(일직)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경계를 설정하여 청사 내외의 방법·방호 조치를 취하고, 이튿날 근무시간 전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 따라서 당진3동에서는 정상(일직) 근무일의 경우 최종 퇴청자가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경계를 설정하고 퇴청하여야 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근무 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당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표】 근무시간 미 준수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경계 미설정 후 퇴청한 사례 : 생략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③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소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본인이 아닌 자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서식12호인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본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위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서식 1인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지원대상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정보 통신망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본인이 아닌 자가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서식 I-17호인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당진3동에서는 2015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까지 【표】와 같이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징구 후 발급해야 하는 ○건에 대하여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복지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표】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중 위임장 미 징구자 명단 : 생략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4 장애인 관련 업무 처리 소홀

-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제32조 제2항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받은 자와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이하 ‘안내지침’)(1)」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2-5 ⑦ 가.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자에 따르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안내지침(1)에 ‘조폐공사로 부터 송부 받은 장애인등록증 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2인 이하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안내지침(2)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은 ‘발급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 아홉 가지임.
- 또한 기 발급한 자동차 표지에 대해 읍·면·동장이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시하고 있음.
 -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
 -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
- 당진3동에서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표1】과 같이 사망, 등급외 등으로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 송부 등의 회수 및 폐기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2인 이하의 장애인등록증 관리자를 지정하여 이중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담당자의 책상서랍에 보관함.
- 또한 【표2】와 같이 행복e음을 통해 자동차 표지상태 변동현황 알림기능이 작동했음에도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 공문발송 등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을 통해 표지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표1】 장애인등록증 반환 대상자 현황 : 생략

【표2】 행복e음 표지상태 변동 알림에 대한 미조치 현황 : 생략

【 처 분 요 구 】

사망 또는 등록 취소된 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증 회수(폐기)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5]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 대상 보고 부적정

- 「당진시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의거 우리시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매월 일정액(2015년까지 10만원, 2016 ~ 2017년 15만원, 2018년 20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과 생일이 속한 달에 생일 축하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조례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고 되어있음.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한 때
 - 1년 이상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 당진3동에서는 【표】와 같이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자 중 사망자에게 사망한 날이 속한 달 이후까지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자로 사회복지과에 확정·보고하여 ○명에게 ***,***원을 과오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음.

【표】 참전유공자수당 과·오 지급자(사망자) : 생략

【 처 분 요 구 】

과오 지급한 참전 유공자 수당 ***,***원을 회수하고, 관련 규정을 연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6] 등록면허세(도로점용허가) 미부과

- 「지방세법」 제24조,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 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면허 부여 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 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하며,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 당진3동에서는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건/ ***천원을 미부과한 사실이 있음.

[붙임 내역] : 생략

【 처 분 요 구 】

미부과한 등록면허세 ○건/ ***천원을 부과·추징하고, 관련 규정을 연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7 농지원부 관리(정비) 부적정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1항은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의거 관리기관장은 연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농가주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 당진3동에서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농지원부 업무지침 및 시스템 사용요령”에 따라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겨 농지원부를 정비해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8 용역 완료 검사 기간 미준수 및 건설 공사 설계 변경 업무 소홀

- 당진3동사무소에서는 20**년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진3동 주민숙원사업 ◎●Ⓜ◎ 및 시설공사를 [표 1]과 같이 시행하였다.

[표 1] 사업현황 :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따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으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감독하고, 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 공사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당진3동에서는 [표 1]과 같이 「당진3동 주민숙원사업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 신고서를 ‘**. **. **일에 제출하였음에도 특별한 검사기간 연장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일이 지나 ‘**. **. **일에 검사를 실시하는 등 법적 검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 「○○○○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기간인 준공일(‘**. **. **) 이후에 설계변경을 시행하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9 건설 공사 분할 및 건설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당진3동사무소에서는 20**년에 ◇◇◇◇의 주민들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2회 추정예산으로 ◇◇◇◇ ㉠㉡㉢ 설치공사를 다음 [표 1] 같이 시행하였다.

[표 1] 공사 현황 :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1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2)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및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에정금액3)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당해 연도 단일 공사로 확정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분할하지 않고 일괄로 발주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 건설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당진3동사무소에서는 20**년도 2회 추정 시설비 단일사업(예산액 *,***만 원)으로 확정된 「◇◇◇◇ ㉠㉡㉢ 설치」 사업을 2건의 공사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지 않고, 해당 ◇◇(㉠㉡㉢) 설치에 필요한 공사업종(㉣㉤시설물 설치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 대표 : ★★, ○○ 도소매업)와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다.
- 그 결과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으며, 다수의 ㉣㉤ 시설물 설치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공정한 사업 수주 기회를 잃게 되었다.

[처 분 요 구]

관련 규정을 연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1)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나라장터
 3) 공사원가(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

10 건설공사 감독 업무 및 준공 검사 소홀

- 당진3동사무소에서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당진3동(○○○) ♣♣♣♣ 정비사업」 외 1개 공사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시행하였다.

[표 1] 공사현황 : 생략

- 공사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1항에 따라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감독하고, 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2015-473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사 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지침 제124조 및 제138조에 따라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 계획표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설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검측하여야 하고,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직접 검측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토록 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는 지침 제 161조에 따라 시공기록 및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당진3동에서는 [표 1]의 「당진3동 ♣♣♣♣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생태 블럭 상단 보호 콘크리트 타설시 합판거푸집(면적 : 8.4㎡)을 설치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였으나 도급자가 합판거푸집을 설치 않았으며, 「○○○○ X X X X 및 △△△ 정비공사」의 경우에는 배수관 기초 설치 시 콘크리트(1.9㎡) 및 합판거푸집(8.5㎡) 시공하지 않는 등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재시공 지시 또는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설계서대로 시공된 것으로 인정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그 결과 계약상대자 △개 업체에 공사비(제경비 포함)를 금***천원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처 분 요 구]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고, 관련 규정을 연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